

[공모펀드 변경대비표]

가. 펀드명: 유진 G-BEST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나. 변경시행일 : 2018년 4월 30일(월)

다. 변경 대상 서류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변경 내용 :

1)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신탁 추가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[집압누사규약 면경내미표	4	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	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명칭 및 종류)	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	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
	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	1. 유진 G-BEST 증권 모투자신탁(주	1. 유진 G-BEST 증권 모투자신탁(주
	식)	식)
	<u><신 설></u>	2.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모투자
		<u>신탁(주식)</u>
제18조(투자대상자산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
취득한도)	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	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
	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	1. 유진 G-BEST 증권 모투자신탁(주	1.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
	<u>식)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</u>	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
	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	
	만,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	
	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	
	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	
	<u>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</u>	
	<u>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유진 G-</u>	
	BEST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수익증	
	<u>권의 투자비율이 일시적으로 90% 미</u>	
	만이 될 수 있으며 이때, 하한은 투	
	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로 한다	
	<u><신 설></u>	2.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
		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
	<u><신 설></u>	3. 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
		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이상으로 한



		다.
	2. (생략)	<u>4. (현행과 같음)</u>
제20조(한도 및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
제한의 예외)	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</u>	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</u>
	<u>18조</u>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	<u>18조제1호 내지 제3호</u> 의 규정은 그
	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	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
	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
	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	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
	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	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
	야 한다	합하도록 하여야 한다
	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	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
	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	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
	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	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
	한한다)	한한다)
	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	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
	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	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
	한한다)	한한다)
	4.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	4.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
	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	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
	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	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	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	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
	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</u> 의 규정을 위반	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3</u>
	하게 되는 경우	<u>호</u>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
Ⅱ. 집합투자기구의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	이 투자신탁은 '국내 주식을 법 시
투자정보 中 '(1) 투자	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	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
전략', "1. 투자목적"	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	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
	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	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
	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	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'
	90%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	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수</u>
	구(주식형)입니다.	<u>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</u>
		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입니다.
Ⅱ. 집합투자기구의	<u><신 설></u>	<u>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</u>
투자정보 中 '(1) 투자		<u>항추가 :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</u>
전략', "2. 투자전략'		<u>모투자신탁(주식)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	<신 설>	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
혁		신탁 추가 :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



		T
		권 모투자신탁(주식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	<u><신 설></u>	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
조. "다. 모자형 구조"		<u>신탁 추가</u>
7. 집합투자기구의 투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	이 투자신탁은 '국내 주식을 법 시
자목적	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	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
	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	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
	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	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
	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	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'
	90%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	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수</u>
	구(주식형)입니다.	<u>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</u>
		<u>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입니다.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	<u><신 설></u>	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
자대상		한에 관한 사항 추가
9. 집합투자기구의 투	<u><신 설></u>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
자전략, 위험관리 및		<u>항 추가</u>
수익구조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	<u><신 설></u>	<u>'모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</u>
관한 사항		<u>과되는 수수료' 및 '모투자신탁에 부</u>
		<u>과되는 보수 및 비용'에 관한 사항</u>
		<u>추가</u>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Ⅱ. 집합투자기구의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	이 투자신탁은 '국내 주식을 법 시행
투자정보 中 '(1) 투자	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	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
전략', "1. 투자목적"	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	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
	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	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
	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	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'을 주된
	의 90%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	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수익을 추구</u>
	자기구(주식형)입니다.	<u>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</u>
		<u>투자기구(주식형)입니다.</u>
Π. 집합투자기구의	<u><신 설></u>	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
투자정보 中 '(1) 투자		추가 :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모
전략', "2. 투자전략'		<u>투자신탁(주식)</u>